

공공재정환수법교육자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목적

II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III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환수·제재부가금·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목적

2020. 1.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

“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부칙 <법률 제16323호, 2019.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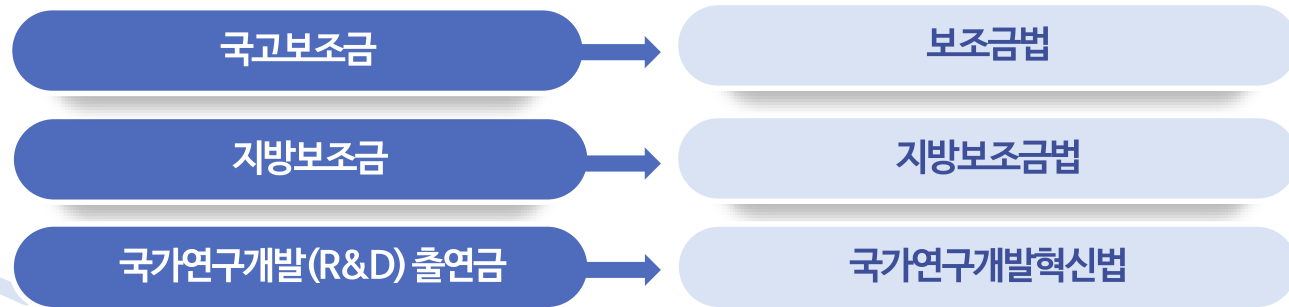
- 0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0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0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0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다른 법률 우선 적용



- 01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 02 부정이익등의 환수
- 03 제재부가금 부과
- 04 가산금 및 체납처분
- 05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 06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 07 명단 공표
- 08 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시



공공재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호)



금품등
(법 제2조제3호)

- 금전
- 채권
- 물품
- 상품권, 이용권 등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2조 제5호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훈급여금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중앙행정기관 소관

01	310-01	손실보상금
02	310-03	포상금
03	310-04	기타보전금
04	320-01	민간경상보조
05	320-05	이차보전금
06	320-06	구호 및 교정비
07	320-07	민간자본보조
0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01	301	일반보전금
0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03	303-01	포상금
04	306	출연금
05	307-01	의료 및 구료비
0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0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0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0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0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1-2	310-01	보상금
02	310-03	포상금등
03	320-01	민간경상보조
04	320-07	이차보전금
05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5-2	320-14	민간자본보조
06	340-01	해외경상이전
07	350	출연금
08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9	620-01	인건비지원
10	620-03	목적사업비
11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2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3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4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6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7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18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19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공공재정지급금 대표사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어린이집 보조금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영유아보육법」 제3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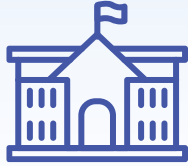
☑ 유가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 이에 따라 증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

행정청과 부정수익자



행정청 (법 제2조제2호)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VS



부정수익자 (법 제2조제8호)

- 부정이익을 얻은 자
- 국회 등 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

부정청구등 유형



부정청구등

법 제2조 제6호

허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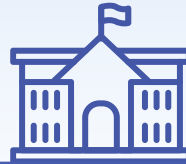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처분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환수
+이자포함

제재부가금
부과
x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법의실효성
확보장치

부정이익등의 환수

법 제8조

환수

지급 중단(법 제7조)

확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환수하는 경우 부정이익 + 이자 환수

불확실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환수금액 산정

시행령 제3조

환수금액

부정이익 가액

허위청구
제공받은 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목적외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금액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20.1.-'20.2. 연 2.1%
'20.3.-'21.2. 연 1.8%
'21.3.-'23.2. 연 1.2%

연 2.9%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수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법 제9조 부정이익(+이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법 시행령 제5조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x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x3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x2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

행정청의 과실
100%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

법 제10조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면제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법 제11조

-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사실 無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환수 (시행령 제4조)



제재부가금 (시행령 제6조)



참고 서식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관련 예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원
⑤ 이자		원
⑥ 환수금액(④+⑤)		원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⑧ 납부할 금액(⑥+⑦)		원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불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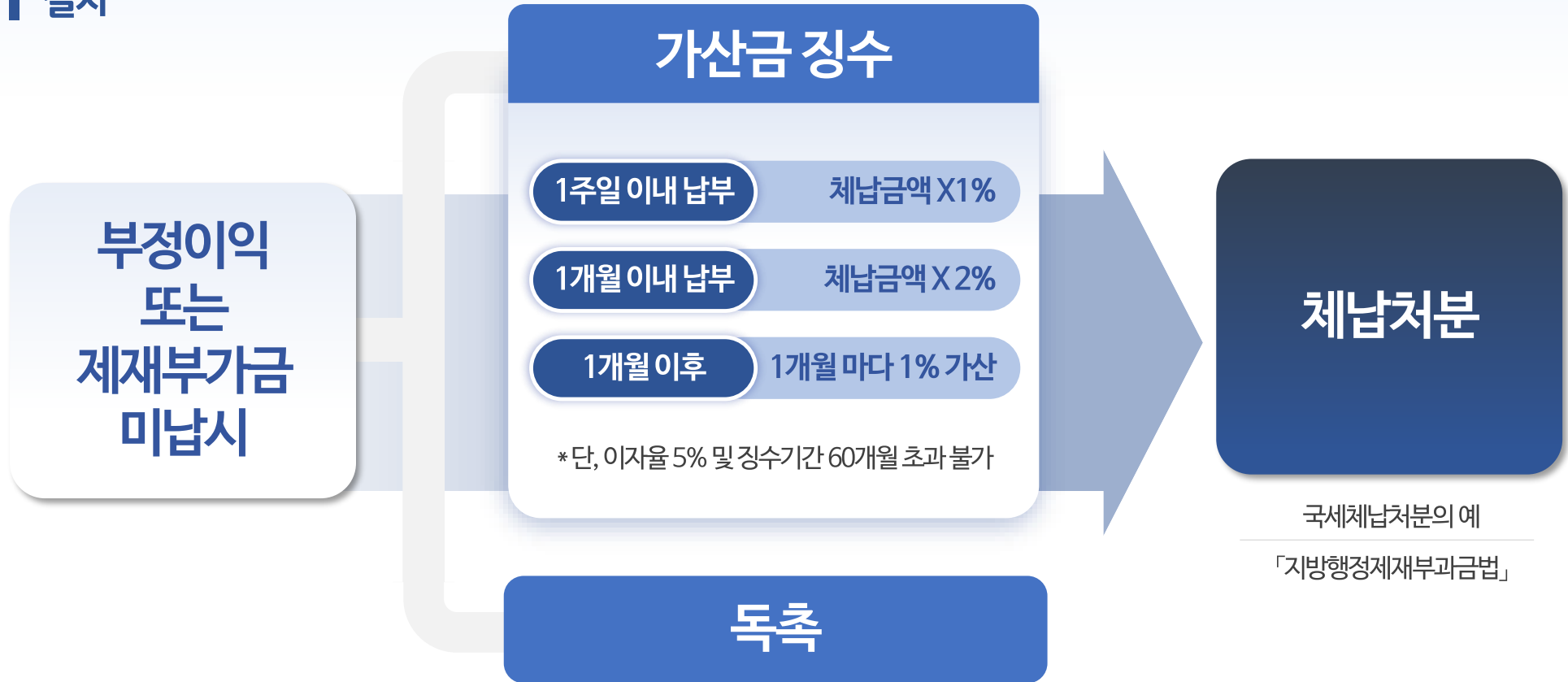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 **법 제12조**

절차



참고 서식

독촉장 관련 예시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①	년	월	일까지	원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납부 장소					
<p>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등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p>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조사 실시

법 제13조 행정청이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 관련자

-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
-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

조사범위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사무소·
사업장
출입조사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절차 준용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② 부정이익가액의 합계 3천만원 이상

심의위원회 심의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위원장 행정청의 부기관장

- 위원**
- 고위공직자 3명 이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
 - 민간전문가 5명 이내

임기

3년
1차례 연임 가능

소명절차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

* 5일 이상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명단공표

기간

1년간
미납시 계속 공표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내용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는 대표자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참고 서식

명단공표 관련 예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년 월 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명단공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장 귀하

작성방법

소명 내용란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처리기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기록·관리

법 제25조 행정청은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내역을 기록·관리

참고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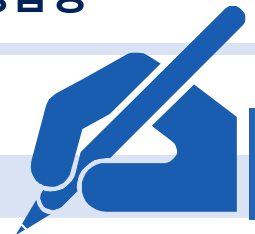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대장
예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허위청구	<input type="checkbox"/> 과다청구	<input type="checkbox"/> 목적외사용	<input type="checkbox"/>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처분일 처분대상자 처분 사유 처분 금액 및 납부기한 명단공표 방법 등 기타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처리 방법·절차 등 준용



* 송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준용
('22.7.5. 시행 예정)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법 제20조

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법 제19조제1항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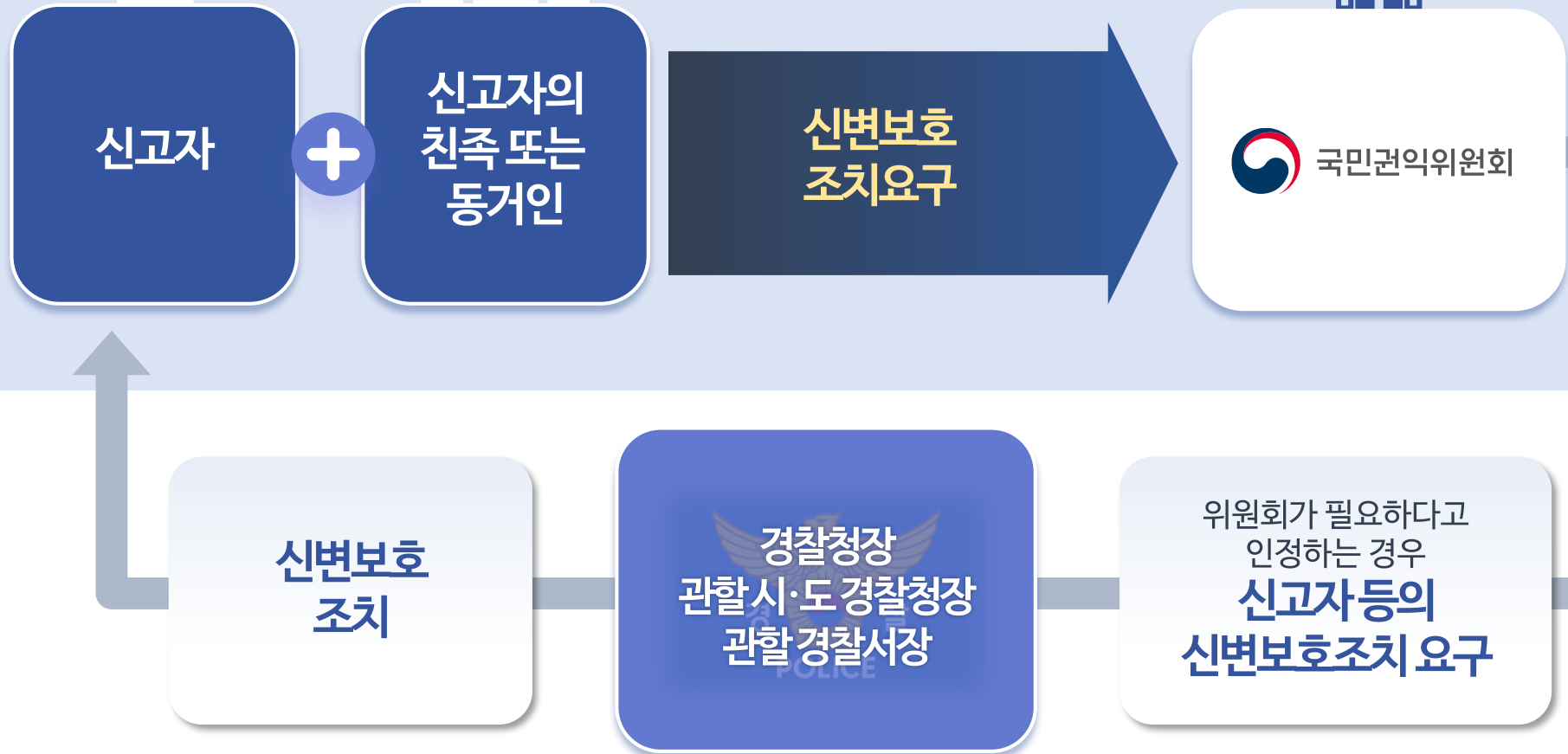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신고자 보호 (신변보호)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법 제22조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형의 감경·면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고자 보상·포상

법 제23조



보상금 지급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한 경우
[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 원]

신고자 보상·포상

법 제23조

보상금 지급
신청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안내사항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신청방법
안내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 ③ 그 감독기관
- ④ 감사원 또는
- ⑤ 수사기관

신고자
“신청 요건 및 상담”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신고자 보상 상담: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신고자 보상·포상

법 제23조

포상금 지급 추천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지급 대상자 추천



추천요건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가능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 ③ 그 감독기관
 - ④ 감사원 또는
 - ⑤ 수사기관

※ 신고자 포상 문의 :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신고자 보상·포상 관련 협조 요청사항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한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포상 추진

보상금

- ◆ 권익위 외 타기관 신고 건도 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 가능

(각급기관 → 권익위) 보상금 지급 대상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하도록 안내

포상금

- ◆ 각급기관에 접수된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련 신고가 공익에 기여한 경우,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각급기관 → 권익위) 포상금 지급기준
(공공기관 재산회복, 제도개선, 관련자 처벌 등)
부합시, 신고자를 포상금 대상으로
권익위에 적극 추천

분야별 부정청구등 주요 사례

교육 분야 주요 적발 사례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무용경연대회



○○협회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후원금으로 돌려받은 후 협회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폐교 학생 유학 하숙비



폐교된 도서지역 학생의 보호자 중 1인은 폐교된 도서지역에서 거주·생업하고 다른 보호자는 학생과 거주하여야 하나, 도서지역 거주자로 등록된 보호자는 도서지역 거주·생업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

분야별 부정청구등 주요 사례

사회·복지 분야

주요 적발 사례

발달재활서비스



○○센터는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에
등원(등교)한 시간에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
바우처 카드(사회서비스이용권)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 ○○조합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를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반납받아 운영비로 목적외 사용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인 ○○센터는 아동 등 대상자에게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 바우처 카드(사회서비스
이용권)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분야별 부정청구등 주요 사례

과학기술·미래 분야 주요 적발 사례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위원장은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정상 지급할 것처럼 조작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아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인건비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용으로 사용

청년일자리



○○기업은 참여근로자인 청년에게는 실제로 월 200만원 미만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시에는 월 2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분야별 부정청구등 주요 사례

지방분권 분야

주요 적발 사례

마을기업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체인 마을기업은 사무장(참여근로자)이 월 3일 근무한 것을 1달 근무한 것으로 과다청구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농촌형 교통모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거주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적합한 교통서비스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인 ○○운수는 보조금을 식사비 등 목적외 사용

분야별 부정청구등 주요 사례

경제 분야 주요 적발 사례

유가보조금



운송사업자○○○는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결제한 다음, 실제로는 일부만을 해당 화물차에 주유하고, 남은 주유량은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운송사업자○○○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유가보조금거래 카드로 계속 결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주○○○는 본인,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하여 상품권을 구입 후, 물품의 판매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함에 따라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